**소규모 합병 공고**

한신공영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6일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도시피디와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【 아 래 】

1. 합병방법 :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도시피디를 흡수합병함 (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)

2. 합병비율 : 한신공영 주식회사 : 주식회사 도시피디 = 1.0000000 : 0.0000000 (무증자합병)

3. 소멸회사의 현황

- 상호 : 주식회사 도시피디

- 소재 :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90(동천동)

4. 합병기일 : 2021년 1월 11일

5. 한신공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도시피디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- 행사절차 : 2020년 11월 21일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 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- 제출기간 : 2020년 11월 23일 ~ 2020년 12월 7일

- 행사방법 및 장소

1) 명부주주 : 한신공영 주식회사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☎02)3393-3072

2) 실질주주 :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(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)

7. 기타

-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
-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

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함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**  한신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본인은 한신공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도시피디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 | | | |
| 주주번호 |  | 주주명 |  |
| 소유주식의 종류 |  | 소유주식수 |  |
| 2020년 월 일 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 주소 : | | | |

2020년 11월 21일

**한신공영 주식회사**

**대표이사 태 기 전**